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73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혁신공유대학사업단) 02-970-9741

제정 2022. 3.2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」 선정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」에 선 정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본 규정에 사용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- 1. AI : Artificial Intelligence, 인공지능 (이하 "AI"라 한다)
- 2. AI+X : Artificial Intelligence(인공지능) + X(애플리케이션), 인공지능 융합기술 (이하 "AI+X"라 한다)

제4조(사업) 사업단은 AI 교육체제 혁신과 대학간 공유를 바탕으로 AI 전문인력 및 AI+X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AI 고등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확

산을 위해 대학본부,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AI 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
- 2. AI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
- 3. AI 교육을 위한 교육컨텐츠 및 인프라 구축
- 4. AI 교육 자원의 대학내 또는 대학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
- 5. 교원 및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사업 참여 제고
- 6. AI 전문인력 및 AI+X 융합인력의 취업, 창업, 진학 지원
- 7. 재직자/일반인, 공동활용대학, 타 컨소시엄으로의 사업성과 공유

제2장 조직

- 제5조(사업단 구성)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, 부단장, 참여교원, 연구교수, 전담인 력 등으로 구성한다.
- ②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사업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)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, 사업단 운영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수행
- 2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- 3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- 4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- 5. 대학본부,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
- 6.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하부조직) ①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, 전공교육부, 융합교육부, 대외협력부, 성과확산부, 학사관리부를 둔다.

- ② 각 부의 부장은 사업 참여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- ③ 전공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AI전공 심화교육 및 부·복수전공 운영 및 관리
 - 2. AI 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 및 관리
 - 3. 대학원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
- ④ 융합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AI 융합전공, 연계전공 교육 운영 및 관리
 - 2. 마이크로디그리 및 나노디그리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
 - 3.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- ⑤ 대외협력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참여대학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 - 2.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 운영 및 관리
 - 3. 국제협력 기반의 교육 운영 및 관리
 - 4. 입학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
- ⑥ 성과확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등의 성과관리
 - 2. 재직자 및 일반인 대상 AI 교육 운영 및 관리
 - 3. 공동활용대학으로의 성과확산
 - 4. 산업교육센터와의 교류 협력
- ⑦ 학사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학과간 공유 및 대학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
 - 2. 공유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정 개정 추진
 - 3.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개정 추진
- ⑧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사업단 운영 및 각 부서의 행정업무지원
 - 2. 예산집행 및 관리
 - 3. 기타 사업단장 업무보조 및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
- 제8조(전담인력) ① 사업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 연구원 및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리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 - ②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제3장 위원회

제9조(구성)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. 산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규정개정위원회를 둔다.

- 제10조(사업관리위원회) ① 사업단의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, 사업 단 예산 편성 및 집행, 사업비 예·결산 심의 등을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단장,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,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, 규정개정위원회 위원장,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교육과정심의위원회) ① AI분야의 혁신적 교과과정 수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사업단의 참여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성과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점검 및 환류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 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의 참여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규정개정위원회) ① 혁신공유대학 사업추진을 위한 대학의 각종 규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규정개정위원회를 둔다.
 - ② 규정개정위원회는 사업단의 참여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사업비 관리

제14조(사업비) 사업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국고지원금(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지원비)
- 2. 대학의 대응투자금
- 3. 기타의 재원
- 제15조(회계연도)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사업의 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. 다만, 사업비 지원기관과의 지 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될 수 있다.
- 제16조(세부지침) 단장은 연도별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·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, 관계 법령 또는 본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

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(준용규정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「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리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리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 다만, 본 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.

부 칙(제673호, 2022. 3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(인공지능)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로 본다.